

이사회 운영규정 개정(안)

2016

문서번호	기획경영팀-16488	선임	팀장	본부장	대표이사		
결재일자	2016.08.04.	08/03 김지연	08/04 박진배	08/04 유석윤	08/04 이근	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책임	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 (2344)호		08/03 신현정				

추진근거	- 2016년도 이사회 운영계획(안) (기획경영팀-10030, 2016.05.30.) -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(공기업담당관-4799, 16.04.29) -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(공기업담당관-8578, 16.07.27)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
	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팀	차기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 개정('16.8 예정)	협약완료
사 업 비	* 해당사항 없음		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
	기 타 :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	관 련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(안)

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수립한 ①「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」에 따라 **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**하고, ②「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」에 따라 **'안전분야 사업'의 외주화에 대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반영하도록**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1. 제안근거

-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(공기업담당관-4799, 16.04.29)

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

- 추진목적
 - 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를 통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·책임성·신뢰성 확보
- 운영방법
 -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, 작성된 **회의록은 이사회 임원의 열람을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관홈페이지 등에 이사회 개최후 14일 이내 공개**
 - **최종 완성된 회의록은 이사장 및 참석 인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**
 - 서면 이사회 개최 시 서면 이사회 개최사유, 안건 및 결과, 개별 임원이 의견을 적시 해서 보낸 경우 의견까지 명시하여 공개(임원명은 익명 처리)
 - 상위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'회의록 비공개 의결서'를 작성

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규정 정비

- 추진목적
 -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市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의결권 행사 확대
- 운영기준
 - 이사회 참석은 당연직이사 본인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나,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할 경우, 소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(필요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)이 **의결권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및 위임장 서식 추가**

- 2016년도 이사회 운영계획(안) (기획경영팀-10030, 2016.05.30.)

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의무화

- 조치사항 : 市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준수
 - 작성된 회의록 임원 열람 및 **기관장 결재 받은 후 재단 홈페이지에 14일 이내 공개**
 - **차기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한 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**
 - 서면 이사회 개최 시 서면 이사회 개최 사유 명시
 -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'회의 비공개 결정 의결서' 작성

당연직 이사의 의결권 위임 규정 정비

- 조치사항 : 市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준수
 - 대리인 자격기준「소관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(필요시 팀장급 이상)」으로 제한
 - 의결권 위임방법을 「위임장이 첨부된 공문접수」로 한정
 - 위임장 서식 신설

■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(공기업담당관-8578, 16.07.27)

「안전분야 사업」을 외주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의무화

- **안전분야 사업**을 외주화하는 경우, '이사회 의결'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, 市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
-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, 의사록이 보존되는 「이사회」에 '안전분야 외주화 사항' 부의를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 제고
- 이사회 안건은 市 주관부서 및 공기업담당관 등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고, 市 실·국·본 부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므로 市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
- 「이사회 운영 규정」과 「연초 이사회 운영계획」에 '안전분야 사업'의 외주화에 대해 '이사회 의결사항'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

2. 주요내용

- 市 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'안전분야 사업 외주화 사항'을 **이사회 의결사항에 반영**
 -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

개정사항	현 행	개 정 내 용
안전분야 외주화 이사회결의결	11.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	⇒ 11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<신설> 12.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<개정>

- 市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지침에 의거하여 **이사회 참석 위임 근거규정 및 위임장 양식 신설**

□ 이사회 운영규정 제16조(권한의 위임)

개정사항	현 행	개 정 내 용
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 근거규정 신설	-	⇒ <신설> 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별표 6>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□ <별표 6> 위임장 양식 신설

- 市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로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, 신뢰성 확보

□ 이사회 운영규정 제18조(의사록)

개정사항	현 행	개 정 내 용
이사회 회의록 작성·보관·공개 의무화	①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 사항은 의사록<별표5>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,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	①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<별표5>을 작성하며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은 이사장 및 참석 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.

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 : 재단 정관 제25조 제6호 이사회 의사결사항
 -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절 차 : · 서울시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
 - 개정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【별지】

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(안)

- 『이사회 운영규정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제11호“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사결을 거처도록 규정한 사항”을 제12호로 개정하고, 제11호“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”을 신설한다.
 - 제16조(권한의 위임) 제3항“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별표 제6호>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 - 제18조(의사록) 제1항“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 <별표5>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,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”를“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<별표5>을 작성하며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은 이사장 및 참석 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 한다.”로 한다.
 - <별표 6> 위임장 서식을 신설한다.

부 칙 (2016.00.00)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. 재산의 관리, 취득, 제한, 처분에 관한 사항 8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. 이사장, 대표이사,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.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	<p>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1.~11<현행과 같음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1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<신설 2016.00.00> 12.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<p>제16조(권한의 위임)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권한의 위임) ①~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별표 6>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0.00></p>
<p>제18조(의사록) ① 이사회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<별표5>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인의 기명,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8조(의사록) ① 이사회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<별표5>을 작성하며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은 이사장 및 참석 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.<개정 2016.00.00></p>
<p>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의결사항(의결서 및 의사록)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부서 및 서울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②<현행과 같음></p>
<p><신설></p>	<p><별표 제6호> <신설 2016.00.00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임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인은 서울디자인재단 제 차 이사회(20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...)에 참석할 수 없기에 아래 대리인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.</p> <p>○ 위임자 직 책 : 성 명 : (인) 위임사유 :</p> <p>○ 대리인 - 직 책 : - 성 명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귀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0월0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09.03.02.

개정 2016.00.0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감사에게 재단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직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
제5조(이사회 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

1.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
3. 정관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④ 이사회 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간사) 이사회 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단의 이사회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 3 장 의 안

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2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재산의 관리, 취득, 제한, 처분에 관한 사항
8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이사장, 대표이사,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<신설 2016.00.00>
12.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 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<개정 2016.00.00>

제8조(부의절차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이사회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 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<별표1>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의안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.

제 4 장 회의절차

제9조(회의통지) ①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접수하고, 회의일정을 검토하여 각 이사에 회의개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개최 통지는 그 의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통지서<별표2> 서식에는 일시,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안설명)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창의경영실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설명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 설명이나,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청취)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,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연기 및 속행)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개의 및 의결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4조(감사의 의견진술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제15조(의결방법의 특례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, 대표이사, 감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<별표3> 서식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권한의 위임)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별표 6>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<신설 2016.00.00>

제17조(의결서 작성)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종료 후 제출안건에 대한 의결서<별표4>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8조(의사록) ① 이사회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<별표5>을 작성하며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은 이사장 및 참석 임원 전원의 서명·날인을 받은 후 보관 한다.<개정 2016.00.00>

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이사회 의결사항(의결서 및 의사록)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부서 및 서울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수당지급 등)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하고,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1 >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년 월 일	200 . . .

안 건 명

제 안 자	
제안년월일	200 . . .

1. 의결주문

2. 제안이유

3. 주요골자

4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나. 예산조치

다. 합 의

라. 절 차

마. 기 타

< 별표 2 >

이사회 소집통지서

수신 :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제 차(정기, 임시)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1. 일 시 : 20
2. 장 소 :
3. 의 안 :

의안번호	의안 제목	소관부서

4. 내 용 : 별첨

20 년 월 일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(인)

< 별표 3 >

제 차 (정기·임시) 이사회 서면결의서

안건명 :

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

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(인)

성명(날인)	찬성	반대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
※ 부의안건 : 별첨

< 별표 4 >

의 결 서

의 결 자	직위	이사장	대표이사	이사	이사	이사	이사	이사
	성명							
	날인							
	직위	이사	이사	이사	이사	이사	이사	이사
	성명							
	날인							
의결일자		의 결 장 소				감 사		
20						(인)		
의안번호	제 목				의결내용	비 고		

년 월 일

작성자 (인)

< 별표 5 >

제 차(정기·임시) 이사회 의사록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

일 시		기 록 자	
장 소			
재적이사			
출석이사			
참 여 자			

의 결 사 항

의안번호	건 명	의결내용	소관부서

회의내용 : 별첨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

년 월 일

이 사 (인)
 이 사 (인)
 이 사 (인)
 이 사 (인)
 이 사 (인)
 감 사 (인)

위 임 장

본인은 서울디자인재단 제 차 이사회(20 . .)에 참석할 수 없기에
아래 대리인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.

○ 위임자

- 직 책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이 사

- 성 명 : (인)

- 위임사유 :

○ 대리인

- 직 책 :

- 성 명 : (인)

년 월 일

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귀하

붙임 1.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(안) 1부.

2. 관련 공문 각1부. 끝.